

6. 현장실습

1) 목적: 학칙 제76조(학점인정 및 성적평가)의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산·학간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재학 중 학점 취득 및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함

2) 강좌 개설

가) 현장실습 강좌는 각 학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개설을 요청하고 총장이 승인하여야 한다.

나) 개설계획서 및 개설신청서 포함 내용: 현장실습 강좌를 개설을 위해서는 개설계획서를 작성하고, 실습기관 선정, 실습에 관한 협약 체결, 지도교수 선정 등 개설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교무처장에게 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) 실습기관 선정 기준

가) 학생의 전공 분야와 연관되어 전공 지식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유사한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기관

나) 학생의 현장 교육 및 실습 생활 지도가 가능하고, 보건·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

다) 중소기업 기본법, 동 법 시행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

라)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

마)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

바) 그 밖에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기관

4) 대상자 선발 및 수강신청

가) 자격: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중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. 다만, 해당 학기 졸업 예정자는 졸업사정 전까지 학점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.

나) 신청서 제출: 현장실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실습수업학기 개시 전 학교에서 정한 기간에 현장실습 지원 신청

다) 대상자 선발: 본교와 실습기관과의 선발 기준에 의거 실습 분야와 실습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학생 선발

라) 수강신청

(1) 현장실습 교과목은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준 학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.

(2) 현장실습 기간에는 현장실습을 제외한 다른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. 다만, 원격강좌 및 논문에 한정하여 현장실습과 동시에 수강할 수 있다.

(3) 학기 중 현장실습을 실시할 경우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수강신청이 확정되며, 기한 내 미납 시에는 수강 신청 취소

5) 교육과정 편성

가) 현장실습은 1일 6시간~8시간/1주 30시간~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

나) 현장실습 기간 및 시기에 따라 학기제(정규학기중 실시) 및 계절제(방학기간 중 실시)로 구분하며, 다음과 같이 교과과정을 편성한다.

구 분	교과목 편성	실습	인정 학점	비 고
-----	--------	----	-------	-----

		기간	2015학번 까지	2016학번 이후	
계절제	국내현장실습(하계-4주)	4주	3학점	3학점	
	국외현장실습(하계-4주)				
	국내현장실습(동계-4주)				
	국외현장실습(동계-4주)				
	국내현장실습(하계-8주)	8주	6학점	6학점	
	국외현장실습(하계-8주)				
	국내현장실습(동계-8주)				
	국외현장실습(동계-8주)				
학기제	국내현장실습(12주)	12주	15학점	13학점	
	국외현장실습(12주)				
	국내현장실습(13주)	13주	16학점	14학점	
	국외현장실습(13주)				
	국내현장실습(14주)	14주	17학점	15학점	
	국외현장실습(14주)				
	국내현장실습(15주)	15주	18학점	16학점	
	국외현장실습(15주)				

다) 현장실습은 재학 중 최대 36학점(2016학번부터는 32학점)까지 이수할 수 있다.

라) 계절제 현장실습은 최대 6학점, 학기제 현장실습은 최대 18학점(2016학번부터 16학점)까지 이수할 수 있다. 다만, 학기제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다음 학기 성적장학금 혜택에서 제외한다.

마) 교육과정은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지침에 따름

6) 이수

가) 현장실습은 재학 중 최대 36학점(2016학번부터는 32학점)까지 이수할 수 있고, 성적표에 국내현장실습, 국외현장실습으로 표시하며, 지도교수가 전공 연관성을 고려하여 전공선택 혹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.

나) 현장실습 기간의 4분의 3이상 이수한 자가 다음에 해당될 경우, 신청자 및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해 이수한 실습 시간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사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.

- (1) 질병, 상해 등으로 정상적인 실습 수행이 어려운 경우
- (2) 실습기관의 부도로 인해 더 이상 실습 수행이 어려운 경우
- (3)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교육 이수가 어려울 경우
- (4) 대학의 공식 행사 및 대회, 국가의 의무적 소집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

7) 현장실습생의 준수 사항

가) 실습생 의무

- (1) 실습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제출
- (2) 실습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
- (3) 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함
- (4) 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, 학과사무실 및 지도교수에게 연락

나) 현장실습 의무 위반자 조치 - 학점인정 불허 및 징계 조치

- (1)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 내규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
- (2) 고의적으로 현장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

(3)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

(4)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

8) 성적평가

가) 교과목의 성적은 학생의 현장실습일지,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수행평가표, 방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

나) 업체와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반영 비율은 7:3을 원칙으로 하며, 담당교수와 업체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

다) 최종성적은 합격(Pass)/불합격(Nonpass)으로 담당교수가 평가하고,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되 평점평균에는 제외함